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7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김중양의원 대표발의(제221987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등)	2

I.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제221987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7. 9.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등)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② (생략) <u><신설></u>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u> <u>2.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u> <u>3.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u>
<u>③ (생략)</u> 제4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4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u>	<u>⑤ -----제4항-----</u>

현행	개정안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

건설기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1,448건의 건설기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75명의 사망 피해가 있었음.

【 최근 5년(2021~2025년) 건설기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사고발생 건수	354	312	339	245	198	1,448
사망자 수	49	46	31	29	20	175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2025년 건설기계 사고조사 분석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조종사 후방 시야 미확인,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인적요인이 70.7%로 물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25년 건설기계 사고조사 분석에 따른 위험요인 】

구 분	건수	비율	위험요인 주요 내용
인적요인	53건	70.7%	- 조종사 후방 시야 미확인 -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 건설기계 조종사 숙련도 부족 - 작업절차계획대로 업무 미준수 - 현장내 안전관리자 미배치 - 신호수, 유도원 미배치
물적요인	11건	14.7%	- 콘크리트펌프 붐 파단 - 천공기 붐 고정볼트 파단 -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고장
환경적요인	10건	13.4%	- 지반침하 - 공간협소 - 자연재해
원인불명	1건	1.3%	
합 계	75건	100%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실적보고서(2026.2.) 재구성
 *2025년 6월~12월 실시한 건설기계 사고조사 기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이 주의력 분산, 위험 신호에 대한 인지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고,¹⁾ 업계에서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작업 중 휴대 전화 사용 자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²⁾

1) “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2.2.10.
 “경남도,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4.4.29.

2) “안전 위해 일할 땐 휴대폰 끄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6.12.

또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 중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³⁾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3)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 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건설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덤프트럭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⁴⁾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사고 발생 현황과 그 원인, 건설현장의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자제·금지 동향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도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휴대용 전화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건설기계사고 발생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수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도로교통법 및 개정안에 따른 휴대용 전화 사용 제한 규정 비교】

구 분	「도로교통법」	개정안
원칙적 사용 금지	○운전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u>운전 중</u> 에는 <u>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u>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를 <u>조종하는 중</u> 에는 <u>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u>
예외적 허용 사유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u>정지</u> 하고 있는 경우	1. 건설기계가 <u>정지</u> 하고 있는 경우
	나. <u>긴급자동차</u> ⁵⁾ 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u>범죄</u> 및 <u>재해 신고</u> 등 <u>긴급한 필요</u> 가 있는 경우	2. 각종 <u>범죄</u> 및 <u>재해 신고</u> 등 <u>긴급한 필요</u> 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u> 하는 경우	3.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u>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u>20만원 이하</u>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u>20만원 이하</u> 의 과태료

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폰 사용은 인명사고를 포함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실제 많은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을 운영 중이나 법적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문 의 처
02)6788-5591